

의안번호	2217460
의 퇴 인	위성곤의원
회 답 일	2026.2.4.
추계번호	26B062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기후과학위원회가 국가 탄소예산을 2년마다 산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5억 8,200만원(연평균 1억 1,64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탄소예산 산출 (안 제8조의2)	194	-	194	-	194	582	116

주: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용역 실시 내용 및 용역비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의2 (탄소예산의 산출) 신설	제19조의2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국가 탄소예산을 2년마다 산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함(제1항)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제2항) 1. 국가 탄소예산의 추정치 2.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탄소예산 부합 여부 평가 3. 현 중장기감축목표등의 국가 탄소예산 부합 여부 평가 4. 국가 탄소예산에 부합하는 중장기감축목표등에 대한 권고안 5.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탄소예산의 산출 방법, 결과보고서의 공개 절차 및 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19조의2 (기후과학위원회의 설치 등) 신설	과학적 역량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현황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독립적인 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를 둠(제1항) 기후과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재량규정
		기후과학위원회의 행정, 분석·예측,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과학센터를 설치·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기후과학센터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제4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3	안 제19조의3(기후과학위원회의 기능 등) 신설	기후과학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예측함(제1항)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및 진전 동향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국가 탄소예산의 산출과 진전 동향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진전 동향에 관한 사항 6. 국회 및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조의2(탄소예산 산출)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2	안 제19조의2 (기후과학위원회의 설치 등)	×	·제3호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 소속 독립 자문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행정, 분석·예측,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과학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위원 보수 또는 수당 지급, 회의 운영 및 소관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 기후과학센터 운영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개정안에

연 번	조·항(조제목)	추 계 여 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3	안 제19조의3(기후과학위원회 회의 기능 등)		서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등 현시점에서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 업무추진계획, 기후과학센터 조직 및 정원 등 추계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기후과학위원회가 2년마다 국가 탄소예산¹⁾을 산출할 경우, 국가 탄소예산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가 탄소예산 산출은 고도의 분석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본 추계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에서는 국가 탄소예산을 2년마다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2년마다 산출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본 추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국가 탄소예산 산출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에 따라 종전의 환경부가 발주한 “탄소가격 부과제 개편방안 연구”(2021년, 1억 6,000만원), “2022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 수준을 특정한 온도 목표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 연도 이후에 허용되는 잔여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말한다.

실적 평가”(2023년, 3억원),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진실적 분석을 통한 향후 NDC 수립전략 마련”(2023년, 1억 2,250만원)을 유사사례로 준용하여, 국가 탄소예산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을 1억 9,400만원으로 가정함
 - 국가 탄소예산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며 추계 첫해인 2027년부터 2년마다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결과, 기후과학위원회가 국가 탄소예산을 2년마다 산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5억 8,200만원이 발생함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탄소예산 산출 (안 제8조의2)	194	-	194	-	194	582	116

주: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용역 실시 내용 및 용역비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용역 실시 내용 및 용역비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